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온라인비디오물의 원활한 유통 기반 구축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85호, 2022. 9. 27. 공포, 2023. 3. 28. 시행)됨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안 제23조의2 신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4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의 적정성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절차·방식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6 및 별표 2의4 신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5. ~ 2023. 1.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재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아동·청소년 보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2.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력의 적정성
2.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절차·방식의 적정성
3.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수단의 적정성

4.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 절차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재지정의 세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업자명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지정일자,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

제23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 외에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제33조의3 및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3.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명령
4. 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제33조의4(종전의 제33조의3)제3호 중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중 “제23조의2제1항”을 “제23조의3제1항”으로 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제1호 중 “초기 화면이나 끝 화면에”를 “초기 화면 이후부터 끝 화면 이전까지에”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본문 중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부터 해당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을 받은 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로 한다.

별표 4 제2호거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8조 제1항제3호의2	1,500만원
--	-----------------	---------

부 칙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제23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온라인비디오물 공급자 및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법 제50조	법 제50조의6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 취소

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1개월	3개월	6개월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법 제50조의6 제1항제4호	지정 취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3조의2(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 법 제50조제2항 단서 및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 2. 해당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려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
제23조의2 (생략)	제23조의3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u><신 설></u>	제23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의 세부기준)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

<신 설>

는 조직·인력의 적정성

2.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절차·방식의 적정성

3.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공하는 수단의 적정성

4.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 절차의 적정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재지정의 세부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의 절차)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또는 재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업자명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지정일자, 지정기간 및 지정번호 제23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 4와 같다.
<신 설>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	제27조(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표시한 사항 외에 별표 3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 별표 3----- ----- ----- ----- . <단서 삭제>
제33조의2 (생 략)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2.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3. 법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50조의6제3항에 따른 청문 실시 제33조의3 (현행 제33조의2와 같음) 제33조의4(규제의 재검토) ----- ----- ----- -----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
해야 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23조의2에 따른 비디오물	3. 제23조의3-----
의 등급 분류기준: 2014년 1월	-----
1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32